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61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론 종결2024. 10. 31.

판결 선고2024. 12. 5.

주 문

1. 피고 A은 망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269,678원 및 그 중 26,005,251원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6,269,6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6,269,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20. 1.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5,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2. 12. 19.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사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23. 5. 11. D에 26,131,561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C가 사망하자 C의 자녀 E, F은 상속을 포기(대구가정법원 2023느단10398호)하였으며, C의 배우자인 피고 A(G에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은 상속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23느단10399호)을 받았다.

마. 한편, C는 2022. 12. 8.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2. 12. 9. 접수 제169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9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제1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5. 11. D에 26,131,56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21. 1. 1.부터 연 8%인 사실, 원고는 2023. 5. 11. C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126,310원을 원금과 상계처리 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 잔금은 26,005,251원(= 대위변제금 26,131,561원 - 회수금 126,310원)이 된 사실, 위 회수금 126,310원에 대하여 위 회수시까지 앞에서 본 손해금율에 따라 2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264,400원이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 A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26,269,678원(= 대위변제 잔금 26,005,251원 + 대지급금 264,400원 + 확정손해금 27원) 그 중 대위변제잔금 26,005,2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7.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32,608,972원, 소극재산은 103,870,186원으로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사고는 C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는데, C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영

별지